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5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 소재의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 또는 제품의 실증 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양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 범위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
지원 금액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연구개발 기간	협약체결일~2026. 04. 30. (과제당 최대 6개월)
지원 규모	7개 과제 내외

※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개발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의견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는 조정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4. 30.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 도비 총 3억 5천만 원 지원

① 혁신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수요(실증)기업* 및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해 시제품의 실증 지원

* ‘수요(실증)기업’이란 개발되는 기술제품의 구매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제품의 성능 평가검증을 수행하는 기업

②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가능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실용화		양산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기본성능 검증	설계제작	성능평가	설계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사업화

* 개발 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 지표로, 연구개발 환경(실험실, 유사 환경, 실제 환경),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 완제품), 기술 수준(개념, 시현, 성능 검증)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분류

□ 지원 분야: 자유공모

○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분야

- 모바일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 신청 시 해당되는 기술 분류명(소분류 등급) 기재

3.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경기도 소재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신청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현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로만 계상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①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수행기관 유형	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5. 평가 절차 및 선정 기준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평가단 구성)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내외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예정)
- (서면평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사업성 및 실증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서면평가 진행

□ 평가 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배점
사업목적 부합성 (20)	지원 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 적정성	연구개발과제 목표와 본 사업 목적의 연관성	10
기술성 (30)	혁신성	기존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혁신 기술의 적용 정도	10
	완성도	이미 확보한 보유 기술의 완성도(TRL)	20
사업수행 역량·계획 (3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5
	실증 가능성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 가능성	15
결과활용 가능성 (20)	성과 창출의 지속 가능성	실증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 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실증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 항목 및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 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기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에만 적용하고, 평가점수에 최대 5점 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항목		가점	비고
유형1	주관연구개발기관이		
	①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인 경우		
	②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인 경우		
	③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내 앵커·협력기업'인 경우		
	④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인 경우		
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100+'인 경우			
유형2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3	

※ 가점 적용은 서류 접수 마감일 또는 모집공고에 게재된 날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관에만 적용

- (감점 기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다음의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점수 총점의 20% 감점 적용

구분	법률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최종선정) 평가점수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 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1년 미만인 중소(견)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1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 단, 사업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 포괄양수·양도계약서
 -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수행 과제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3책 5공)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④ 과제 중복성

- 신청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단,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⑤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20% 이상 계상 권고

⑥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⑦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CCC”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 “CCC”에는 “CCC+”, “CCC”, “CCC-”를 모두 포함함

⑧ 기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 9. 22.(월) ~ 2025. 10. 24.(금) 18:00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sshfish85@snu.ac.kr
-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 ※ 파일명: 실증지원_기업명 (예) 실증지원_(주)○○○○.zip

□ 구비 서류

순번	제출 서류	부수	서류유형	
			필수	해당시
1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첫 페이지 및 서식 등 직인이 포함된 부분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 후 한글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고일(2025. 09. 22.) 이후 발급분 제출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4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5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6	중소(견)기업 확인서	1부	○	
7	가산점 증빙서류	1부		○

-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유의 사항

- 접수 마감 결과 또는 평가 결과, 모집분야별 적격업체수 미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하여야 함

- 과제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해당기관 선결제 후 연구비로 계상 가능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비는 RCMS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전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도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7. 근거 법령 및 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024. 5. 22.)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24. 5. 22.)

8. 문의처

□ 사업 문의

전문기관	연락처	E-mail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	031-888-9110	sshfish85@snu.ac.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